

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학원과 일반유아대상학원의 교육환경과 교사복지 실태 비교*

김은설¹⁾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유아대상 학원의 교육환경과 교사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일반 유아대상학원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 학원에 근무하는 교사 41명과 일반 유아대상학원에 근무하는 교사 135명 등 총 176명이었으며, 구조화된 면담과 관찰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실환경과 실내 환경 등 교육환경과 교실 위생관리, 화장실 및 샤워실, 조리실 등을 관찰하였고 교사복지제도 파악을 위해 평균 월급, 연금 및 보험 가입여부, 평균 근무시간, 휴가일수 등을 조사하였다. 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 학원이 일반 학원에 비해 자유선택활동영역을 구비한 비율이 높았고 교재교구의 청결도, 방음, 화장실위생, 조리실시설설비, 계단안전성, 연금 및 보험가입여부에서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유아대상학원, 유아교육위탁기관, 교육환경, 교사복지

* 본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2006년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수행한 「유아대상 학원 실태조사」 보고서의 일부임.

1)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또는 보육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그 중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기관이용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일부 유아대상학원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각각 일종의 학교나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반일 이상의 시간 동안 어린 자녀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신뢰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에 비해 학원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과외 학습이나 특기지도를 위한 사교육기관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가정의 어린이들이 반일 이상의 시간동안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대상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들 학원에 대한 지원을 전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유아미술학원 관계자들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이 유치원에 갈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갈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학원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원수강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한준상, 2006).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취지에서, 국회와 정부는 2004년도에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시행규칙에 특례조항을 두어 유아대상 학원이 유아교육 위탁기관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였다. 그 요건은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추고 시·도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다. 학원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이 최소한의 교육적 요건을 구비하고 관계자들의 심의절차를 거침으로써 투입하는 재정이 교육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을,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학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와 함께, 궁극적으로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치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양질의 환경에서 유아교육을 제공케 하고자 하는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지원 특례기간을 2년(2005.3-2007.2)으로 제한했던 것은 유아대상 학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적인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유치원으로 전환가능한 수준이 된 학원만 지원 대상에 잔류토록 하고 교육환경 수준이 낮은 학원은 더 이상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지난 2007년 2월, 유아대상 미술학원의 유치원 전환 준비기간을 연장해주고 지원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이 제도의 기간을 2009년 2월로 연장·지정하였다. 유아대상 학원 측에서는 다시 한 번 유치원의 시설기준으로 학원시설을 정비하고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일단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의 지원 대상으로서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에 의해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유아대상 미술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은 지정되지 않은 학원의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인가? 국가와 법이 의도하는 바처럼,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은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러한 현실적 궁금증에 대한 탐구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해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교육 위탁기관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유아대상 학원(주로 미술학원)의 비교대상인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자료와 대비하였을 때 그들 간의 차이점이나 특수성, 개선점 등을 밝혀내기 위한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관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여성가족부에 의해 실시된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의 일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서문희 외, 2005)’의 결과는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들의 학원 이용 실태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이다. 즉,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원이 육아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과 교육, 보호 등이 모두 주요 이용 목적으로 꼽혀 이용 이유가 다소 복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거리를 학부모들이 선택기준으로 하고, 인성지도와 보호를 기대하며, 아동 관련 정보를 주간·월간으로 제공받게 되는 것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유사하였다. 그럼에도 하루 평균 6시간 20분

을 이용한다는 것은 보육시설보다는 짧고 유치원보다는 긴 평균이용 시간임을 볼 때 이용유형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최근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대상학원에 저소득층이 몰리는 현상은 없어지고 있음도 밝혀졌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들을 통해 유아대상 학원의 이용에 대한 일부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으나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곳의 특징 등은 전혀 조사되지 못한 부분이다. 따라서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유아대상 학원과 지정되지 않은 곳의 특성을 비교해 보는 본 연구의 시도는 가장 앞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본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에 대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제대로 구비되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유아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교사의 복지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유아대상학원이 유아교육의 질적인 측면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추측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유아대상학원은 지정을 받지 않은 학원과 비교할 때 실내의 교육환경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유아대상학원은 지정을 받지 않은 학원과 비교할 때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유아대상학원은 지정을 받지 않은 학원과 비교할 때 교사 복지 실태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의 분석에 앞서서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제도의 개요와 지정받은 학원의 법적인 성격, 그리고 이러한 학원과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의 법적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다.

II. 유아대상학원과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제도

본 연구의 대상은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이다. 따라서 유아대상학원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학원관련법과 유아관련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학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평생교육법」과 그 하위법인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에 나타나 있는 유아대상학원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법 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대상학원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비교해 그 특성을 정리해 보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한 유아대상학원

가. 학원의 정의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학원은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1장 제2조).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규명하고 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즉, 학원은 학교교육 이외에 필요한 지식, 기술, 예능을 비교적 장시간 동안 교습하는 곳이나 학습장소이다. 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규정한 학교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교육기관이다.

유아대상 학원은 학원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평생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위에서 살펴본 법적인 학원의 성격을 유아대상 학원에 적용해 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강조될 뿐 학원의 고유한 목적인 미술, 음악 등 예능교육 프로그램과정을 당연히 제공할 수 있는 사교육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나. 교사(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원의 강사는 각 개별 학원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정해진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특정한 기술 분야의 기능보유자라면 경력이 있을 경우 고졸

자이어도 강사가 될 수 있으며(제12조 2항), 예능 분야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은 학력과 무관하게 강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학원의 경우에 비추어 유아대상학원의 강사자격을 알 수 있고 유아대상학원만을 위한 강사의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평생교육을 전공하거나 상관없이 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즉 법적으로 학원이라는 범위 내에 '유아대상학원'이라는 하위 영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대상학원의 강사 조건도 일반학원 강사와 동일하다.

다. 설립 및 운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은 교육감에게 신고·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설기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4조).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동 법률 제16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학원의 시설·설비·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립·운영자는 채용한 학원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하고(동 법률 제13조) 수강료 또한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동 법률 제 15조 2항).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의 학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1년에 1, 2회 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설비·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고, 강사의 인적사항, 수강료 등을 점검하여 수정·지시를 하기도 한다.²⁾

또한 학원은 교육기관이므로, 교육환경 정화의 목적으로,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고, 특히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교육에 유해한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법률 제5조).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학원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습과정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장소이기 때문에 관할지역내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교육감에게 학교와 함께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도 함께 지우고 있는 것이다.

2) 나경 외(2006)의 조사에서 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연간 1, 2회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유아대상학원과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법적기준 비교

유아대상학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법적 근거에 비추어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대상학원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첫째, 근거 법에 명시된 기관의 성격이 다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취학 전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우리나라의 4개의 교육기본법 중 하나이다. 또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반면에 학원은 평생교육법의 하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개인이 설립·운영을 하는 사교육장소이다.

이렇게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학교이고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학원은 개인이 설립·운영 하는 사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설립인가 조건이 다르다.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보육시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원은 교육감에게 대한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각각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이 정한 인가관련 규준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자가 건물이 원칙이고 보육시설은 보육아동 1인당 면적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한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설립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셋째,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유치원은 국가가 정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장학지도를 받아야 한다. 보육시설은 표준보육과정을 따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원은 설립허가를 받은 미술 등의 특정 교습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어떤 내용을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학원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도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유아대상 학원과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넷째, 교사의 자격조건이 다르다.

유치원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국가가 발급한 유치원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채용해야 한다. 보육시설도 대학이나 교육원에서 일정기간의 보육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득하는 보육교사자격을 소지한 자를 교사로 채용한다. 반면 학원은 학원 강사 자격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교습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를 채용하면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된 각 기관의 교사관련 규정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아대상 위탁기관의 경우 유치원 교사 자격자증 소지자를 1인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대상 교육기관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3.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제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아대상 학원은 학원이기 때문에 교습과정 운영이나 교사 자격 및 채용, 설립인가 조건 및 운영 측면에서 학교법을 근거로 하는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을 따르는 보육시설과 다른 점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아대상 미술학원의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기능을 인정하여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조항은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아동에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2005년 3월 24일자로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유아교육비지원의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유아교육비지원의 특례)

- ① 시·도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 교육비를 지원한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즉, 위탁교육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기준에 부

합하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시도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법상의 위탁기준은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³⁾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평생교육법의 관련법만을 따랐던 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은 유아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에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을 포함한 것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새로운 질적 준거가 제시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학원을 선택한 원아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전국 소재 유아대상 미술학원 176개원을 표집하여 방문 면담 조사와 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대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한 2006년 「유아미술학원 중심 유아대상 학원 실태조사」에서 전수 조사 대상이 된 1,974개원 중에서 10%를 무선표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다소의 어려움으로 유아교육위탁기관 선정 학원 41개, 비선정 일반유아대상학원 135개 등 총 176개 학원을 표집하였다⁴⁾.

3)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관련된 별표조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면적(체육장 면적을 제외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유치원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 따른다.
 다. 체육장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의 유치원 체육장의 기준 면적에 따른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체육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유아교육과정준수, 장학지도, 학급당 장교사 자격자 1인 채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4) 2006년 9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학원은 전국적으로 157개였다.

조사대상 학원에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교사를 면담하고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교사는 선정된 학원에서 재직경력이 가장 많은 담임교사로 통일하였으며, 사전 교육을 통해 조사원의 평정능력을 균일화한 후 각 학원의 교육환경을 관찰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학원교사 176명은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 현황

단위: 세, 명, (%)

구분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학원	비선정 일반유아대상학원	계
연령	평균(표준편차)	31.4(5.4)	31.4(5.3)	
최종학력	전문대졸	30(73.2)	84(62.2)	114(64.4)
	대졸	9(22.0)	46(34.1)	55(31.3)
	대학원졸	0(0.0)	2(1.5)	2(1.1)
	기타	1(2.4)	3(2.2)	4(2.3)
전공(복수응답)	유아교육	15(37.5)	37(28.7)	52(29.5)
	보육/아동	10(25.6)	26(20.2)	36(20.5)
	미술	19(47.5)	74(56.5)	93(52.8)
	미술외예체능	4(10.3)	14(10.9)	18(10.2)
	기타	4(10.3)	5(3.9)	9(5.1)
전체		41(100.0)	135(100.0)	176(100.0)

2. 조사원 교육 및 방문조사 절차

면담과 관찰을 위해 본 연구의 조사원은 유아대상 미술학원이 유아교육·보육·미술 특기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리적 환경을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보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교사경력이 있는 사람을 조사원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최종 위촉된 총 15인의 조사원은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재학생이 10명, 박사과정 재학생이 5명이었으며, 전원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교사 경험이 있었다.

조사원 교육을 1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사원 간의 관찰 평정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표집조사를 위해 위촉된 조사원들

의 학력이나 경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연구자들이 개발한 관찰 항목별 평정기준을 제시하고 실내와 실외 영역에 대한 평정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평정연습을 시행하였다.

조사원들은 면담과 관찰 대상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학원에 연락하여 원장의 동의를 얻고 협의하여 방문일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유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대에 방문하여 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면담 방법은 원장용과 교사용 조사지 작성 시 면담자가 조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사지를 한 부 제시하고, 조사원은 자신의 조사지에 면담자가 응답한 사항들에 대해 표기하도록 하였다.

3. 조사 내용 및 결과분석

조사 내용은 원장과 교사의 인적배경, 교육환경, 정책인지, 재정 및 유아교육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인식과 실내외 환경 실태 등이었다. 표집조사 내용을 대상과 방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수집된 조사의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2> 면담 및 관찰 조사 항목과 내용

항 목		내 용
관찰 조사	교육 환경	교실 환경 1. 자유선택활동 영역: 설치여부 2. 수업자료: 컴퓨터 구비여부, 학습지 활용, 실내재배식물, 실내사육동물
	실외 환경	1. 주변 환경: 위험물취급업소, 유흥업소, 상가(상점) 2. 놀이시설: 유형, 근접성, 공간, 청결수준, 놀이기구의 적합성
	위생 및 안전 관리	1. 교실: 교실·교재교구·가구 등의 청결 2. 화장실: 학원전용여부, 샤워시설현황, 비품구비현황 3. 조리실: 청결, 적절성, 공간과 시설설비의 충분성, 식수의 위생 4. 계단: 높이의 적합성, 손잡이의 안전성
교사 면담 조사	인적배경	1. 성, 연령 2. 학력, 전공 3.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
	교사 복지	1. 급여: 월 평균 급여 2. 보험가입: 4대보험 가입여부 3. 근무여건: 연 중 휴가일 수, 유형별 일일업무시간, 어려운 점

IV. 연구결과

1. 교육 환경의 비교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의 교육환경을 지정되지 않은 일반학원의 그것과 비교해 보기 위해 교실 환경, 실외 환경, 안전 및 위생 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관찰, 조사한 결과를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가. 교실환경

먼저 교육을 위한 교실환경을 대조해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유아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교실 설비라 볼 수 있는 언어, 조형, 조작, 수 영역 등 자유선택활동영역이 교실 내에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인 176개 학원 중 27.7%인 49개원이 자유선택활동영역을 갖추고 있었다.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은 48.8%가 자유선택활동영역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위탁지정이 되지 않은 일반학원은 21.5%만이 자유선택활동영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은 비위탁기관보다 비율상 2배로 많은 곳에서 자유선택활동영역을 구비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표 3>).

<표 3> 자유선택활동영역 설치 유무

구분		없음	있음	계	단위: 개원(%) $\chi^2(df)$
유아교육기관					
위탁여부	위탁지정학원	21(51.2)	20(48.8)	41(100.0)	11.67(1)**
	비지정학원	106(78.5)	29(21.5)	135(100.0)	

**p<.01

상품화된 워크시트나 활동지를 뜻하는 학습지가 교실에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종 이상 많은 종류의 학습지가 있었던 학원이 전체의 57.1%, 전혀 없는 학원이 3.4%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은 51.2%가 3종

이상을 가진 반면 지정되지 않은 일반학원은 59.3%가 3 종류이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4>).

유아의 정서발달교육과 친자연환경조성이란 측면에서 실내재배용 식물 화분이 교실에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위탁기관지정학원의 경우는 36.6%가 1~2종류의 식물을, 22.0%가 3종류이상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어 58.6%정도가 1종류 이상의 식물을 실내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탁지정을 받지 않은 일반학원에서도 45.9%가 적어도 식물을 하나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형태 학원 간의 이러한 수치적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지는 않았다.

또한 곤충 등을 비롯하여 유아들이 관찰할 수 있는 실내사육 동물이 교실에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73.2%의 위탁기관지정학원이 실내사육 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위탁지정을 받지 않은 학원은 90.4%가 실내사육 동물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이 그렇지 않은 학원에 비해 유아들의 정서함양과 자연관찰학습 등을 위한 실내동물을 더 많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여부에 따른 실내구비환경 비교

구분		없음	1~2종	3종이상	계	$\chi^2(df)$
학습지	위탁지정학원	1(2.4)	19(46.3)	21(51.2)	41(100.0)	1.20(2)
	비지정학원	5(3.7)	50(37.0)	80(59.3)	135(100.0)	
실내식물재배	위탁지정학원	17(41.5)	15(36.6)	9(22.0)	41(100.0)	2.24(2)
	비지정학원	73(54.1)	42(31.1)	20(14.8)	135(100.0)	
실내동물사육	위탁지정학원	30(73.2)	7(17.1)	4(9.8)	41(100.0)	12.03(2)**
	비지정학원	122(90.4)	12(8.9)	1(.7)	135(100.0)	
교육용 컴퓨터	위탁지정학원	31(75.6)	10(24.4)	41(100.0)	41(100.0)	10.26(1)**
	비지정학원	126(93.3)	9(6.7)	135(100.0)	135(100.0)	

**p<.01

시청각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의 매체로서 교육용 컴퓨터가 교실에 갖추어져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1.3%가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의 구비율이 24.4%로 평균보다 배 이상 높았다. 위탁기관과 위탁기관이 아닌 곳과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나. 실외 환경

실외 교육환경은 크게 학원 주변의 환경에 대한 관찰과 실외 놀이시설에 대한 조사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교육환경의 정화 등의 조항에 의하면 학원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해업소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위험물 취급시설이나 유해업소 등과 가까이에 있는 학원들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조사대상이 된 학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한 결과, LPG저장고, 세차장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 주변에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23.2%,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가 41.2%, 상가 또는 상점이 있는 경우는 8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원이 상가건물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을 비교해 살펴보면, 주변에 위험물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상가나 상점이 가까이에 위치한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가나 상점이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한 경우가 유아교육위탁지정 학원은 22.0%였으나 비지정학원은 10.4%로, 위치한 지역의 환경에 있어 위탁지정을 받은 학원이 보다 양호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5>).

<표 5> 위탁기관 여부별 주변 환경 비교

		단위: 개원(%)				
구분		없음	1~2곳	3곳 이상	계	$\chi^2(df)$
위험물취급 시설	위탁지정학원	33(80.5)	6(14.6)	2(4.9)	41(100.0)	.443(2)
	비지정학원	102(75.6)	24(17.8)	9(6.7)	135(100.0)	
유해업소	위탁지정학원	27(65.9)	5(12.2)	9(22.0)	41(100.0)	1.896(2)
	비지정학원	76(56.3)	29(21.5)	30(22.2)	135(100.0)	
상가, 상점	위탁지정학원	9(22.0)	18(43.9)	14(34.1)	41(100.0)	6.078(2)*
	비지정학원	14(10.4)	86(63.7)	35(25.9)	135(100.0)	

*p<.05

또 하나의 실외 교육환경이라 볼 수 있는 실외 놀이시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바깥놀이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놀이터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아들이 사용할 놀이터가 없는 경우가 28.8%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할 놀이터가 있는 학원들은 학원이 소유한 놀이터가 있는 곳이 15.8%, 아파트 단지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22.6%, 일반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30.5%, 기타 빈 공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2.3%로 나타났다(<표 6>).

유아교육 위탁지정 학원의 경우 놀이시설이 없는 경우가 4.9%에 불과한데 비해 비위탁기관은 놀이시설이 없는 경우가 35.6%에 이르는 등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유아교육 위탁기관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한 놀이터 구비에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위탁지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실외 놀이시설을 구비해야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며 위탁기관 지정 당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놀이터 사용계획을 서류로 확인하거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9%의 위탁지정 학원이 실외 놀이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주목되어야 할 것 같다.

<표 6> 실외 놀이시설 유무 및 유형

단위: 개원(%)

구분	없음	자가 시설	아파트 단지 내	일반 공용시설	기타 빈 공터	계	$\chi^2(df)$
전체	51(28.8)	28(15.8)	40(22.6)	54(30.5)	4(2.3)	176(100.0)	
위탁기관							
여부							
위탁지정학원	2(4.9)	10(24.4)	15(36.6)	12(29.3)	2(4.9)	41(100.0)	18.99(4)**
비지정학원	48(35.6)	18(13.3)	25(18.5)	42(31.1)	2(1.5)	135(100.0)	

**p<.01

놀이시설의 전반적인 실태를 위탁기관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탁기관지정 학원이 위탁기관이 아닌 학원에 비해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놀이터 및 시설의 청결상태, 놀이기구의 적합성 등도 위탁기관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기관의 경우는 학원과 놀이터의 거리가 가깝다가 58.5%인데 비해 비위탁기관이 경우는 32.6%였다(<표 7>).

<표 7> 위탁기관 여부별 놀이시설 실태

		단위: 개원(%)					$\chi^2(df)$
구분		없음	미흡	양호	우수	계	
충분한 공간	위탁지정 학원	2(4.9)	5(12.2)	17(41.5)	17(41.5)	41(100.0)	24.28(3)***
	비지정 학원	49(36.3)	23(17.0)	45(33.3)	18(13.3)	135(100.0)	
놀이터와 시설의 청결	위탁지정 학원	2(4.9)	5(12.2)	23(65.1)	11(26.8)	41(100.0)	26.66(3)***
	비지정 학원	49(36.3)	31(23.0)	45(33.3)	10(7.4)	135(100.0)	
놀이기구의 적합성	위탁지정 학원	2(4.9)	11(26.8)	19(46.3)	9(22.0)	41(100.0)	22.03(3)***
	비지정 학원	50(37.0)	42(31.1)	32(23.7)	11(8.1)	135(100.0)	
		없음	멀다	보통	가깝다	계	
학원과의 거리	위탁지정 학원	2(4.9)	4(9.8)	11(26.8)	24(58.5)	41(100.0)	17.47(3)**
	비지정 학원	49(36.3)	17(12.6)	25(18.5)	44(32.6)	135(100.0)	

p<.01 *p<.001

2. 위생 및 안전 관리의 비교

학원 교실은 저항력이 약한 어린 유아들이 긴 시간 동안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위생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관찰 조사 결과 교실의 위생관리 실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평가를 받은 사항이 많았다.

교실의 위생관리 실태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에 따라 비교해 보면, 교재교구의 청결, 방음 상태 등에서 위탁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실의 청결, 책걸상 및 교구장의 청결, 환기·통풍, 채광 등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교재교구의 청결, 방음 등에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의 경우 양호이상의 판정을 받은 비율이 69.3~75.0%로 상당히 높았으나 위탁지정을 받지 않은 일반 학원은 40.3~52%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방음에 있어서는 위탁지정을 받지 않은 학원의 59.6%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교실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짐작케 했다.

교재교구는 유아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씻거나 교체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면 지속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방음은 건물의 위치나 사용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원 설립 당시의 경제적인 요인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방음 시설의 설치도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학원 교실의 소음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표 8>).

<표 8> 위탁기관 여부별 교실 위생관리 실태

단위: 개원(%)

구분		미흡	양호	우수	계	$\chi^2(df)$
교실						
청결	위탁지정학원	9(22.0)	23(56.1)	9(22.0)	41(100.0)	2.31(2)
	비지정학원	45(34.4)	64(48.9)	22(16.8)	131(100.0)	
교재교구						
청결	위탁지정학원	10(25.0)	23(57.5)	7(17.5)	40(100.0)	6.61(2)*
	비지정학원	61(48.0)	50(39.4)	16(12.6)	127(100.0)	
책걸상·교구						
장 청결	위탁지정학원	11(26.8)	22(53.7)	8(19.5)	41(100.0)	3.24(2)
	비지정학원	55(42.3)	57(43.8)	18(13.8)	130(100.0)	
환기·통풍						
	위탁지정학원	7(17.5)	23(57.5)	10(25.0)	40(100.0)	4.29(2)
	비지정학원	40(30.3)	74(56.1)	18(13.6)	132(100.0)	
채광						
	위탁지정학원	13(31.7)	19(46.3)	9(22.0)	41(100.0)	1.96(2)
	비지정학원	46(35.1)	68(51.9)	17(13.0)	131(100.0)	
방음						
	위탁지정학원	12(30.8)	18(46.2)	9(23.1)	39(100.0)	10.25(2)**
	비지정학원	68(59.6)	34(29.8)	12(10.5)	114(100.0)	

*p<.05 **p<.01

화장실에 대해서는 학원 원아들만을 위한 전용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지, 화장실에 필요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유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4.9~5.2%여서 대부분의 학원이 전용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상태는 위탁교육지정학원과 비지정학원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지정학원의 경우 우수 평정을 받은 비율이 48.8%였으나 비지정학원은 우수 평정 비율이 25.9%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상태가 양호하고 청결하다고 볼 수 있는 양호 평정이상의 비율을 보면 각각 75.6%와 69.6%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휴지나 비누 및 수건 등과 같은 화장실 비품의 구비 실태를 비교해 보면, 유아교육위탁 지정학원은 14.6%가 미흡 판정을 받은 데 반해 비지정학원은 36.3%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부가적으로,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역시 미흡 판정의 비율에서 학원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9>). 따라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이 지정되지 않은 학원에 비해 위생 물품 구비율도 높고 실태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화장실 및 샤워실 실태

단위: 개원(%)

구분	없음	미흡	양호	우수	계	$\chi^2(df)$
전용화장실						
위탁지정학원	2(4.9)	8(19.5)	11(26.8)	20(48.8)	41(100.0)	7.94(3)*
비지정학원	7(5.2)	34(25.2)	59(43.7)	35(25.9)	135(100.0)	
화장실비품						
위탁지정학원	5(12.2)	6(14.6)	18(43.9)	12(29.3)	41(100.0)	8.29(3)*
비지정학원	15(11.1)	49(36.3)	50(37.0)	21(15.6)	135(100.0)	
샤워시설						
위탁지정학원	21(51.2)	7(17.1)	10(24.4)	3(7.3)	41(100.0)	8.09(3)*
비지정학원	80(59.3)	33(24.4)	11(8.1)	11(8.1)	135(100.0)	

*p<.05

위탁기관 지정 학원은 조리실을 구비하지 않은 비율이 17.1%로 매우 낮았으나 비지정 학원은 28.9%로 큰 차이가 있었다. 또 조리실 공간과 시설 설비의 충분한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조리실의 공간이 양호 또는 우수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 비율이 51.3%이고 미흡한 곳이 31.7%였다. 그러나 위탁지정을 받지 않은 학원인 경우에는 미흡한 비율이 40.7%에 달하였다(<표 10>).

<표 10> 위탁기관여부별 조리실 위생관리 실태

단위: 개원(%)

구분	없음	미흡	양호	우수	계	$\chi^2(df)$	
조리실의							
청결	위탁지정학원	7(17.1)	10(24.4)	15(36.6)	9(22.0)	41(100.0)	3.32(3)
	비지정학원	39(28.9)	29(21.5)	49(36.3)	18(13.3)	135(100.0)	
설치장소의							
적절성	위탁지정학원	7(17.1)	11(26.8)	15(36.6)	8(19.5)	41(100.0)	4.14(3)
	비지정학원	39(28.9)	37(27.4)	46(34.1)	13(9.6)	135(100.0)	
충분한							
공간	위탁지정학원	7(15.0)	13(31.7)	12(29.3)	9(22.0)	41(100.0)	8.81(3)*
	비지정학원	39(28.9)	55(40.7)	31(23.0)	10(7.4)	135(100.0)	
시설설비							
위탁지정학원	7(17.1)	11(26.8)	11(26.8)	12(29.3)	41(100.0)	12.77(3)**	
	비지정학원	39(28.9)	57(42.2)	26(19.3)	13(9.6)		135(100.0)
식수의							
위생	위탁지정학원	0(0.0)	9(22.0)	19(46.3)	13(31.7)	41(100.0)	3.32(2)
	비지정학원	0(0.0)	32(23.7)	78(57.8)	25(18.5)	135(100.0)	

*p<.05 **p<.01

조리실의 시설설비에 있어서도 위탁기관인 경우는 26.8%가 미흡하다고 조사된 데 비해, 비위탁기관은 거의 2배에 달하는 42.2%가 미흡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리실의 청결상태나 설치장소의 적절성, 식수 위생 등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유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단의 안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계단의 높이가 유아의 신체에 적절한지, 그리고 계단손잡이는 안전한 간격으로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계단 높이의 적합성은 위탁기관 지정학원과 비지정 학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위탁 학원의 75.6%가 적합 판정을 보인 데 반해 비지정학원은 48.1%만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계단손잡이의 안전성 또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비율이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학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계단의 안전성

					단위: 개원(%)	
구분		없음	부적합	적합	계	$\chi^2(df)$
계단높이	위탁지정학원	1(2.4)	9(22.0)	31(75.6)	41(100.0)	9.767(2)**
	비지정학원	12(8.9)	58(43.0)	65(48.1)	135(100.0)	
계단손잡이	위탁지정학원	3(7.3)	10(24.0)	28(68.3)	41(100.0)	8.493(2)*
	비지정학원	21(15.6)	55(40.7)	59(43.7)	135(100.0)	

*p<.05 **p<.01

3. 교사 복지의 비교

유아대상 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사(학원 강사)⁵⁾들의 복지를 살펴보는 것은 동일한 연령의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들의 복지와 비교하여 그 수준을 파악해 볼 때 보다 정확하게 학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

5)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된 유아대상 학원에 근무하는 177명 학원 강사 중 87.1%가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초중등교사 중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교사자격자이고, 일반 학원에서 전문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와는 달리, 유아에 대해 반일이상 생활지도, 유아교육 등 전반적인 선생님께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강사’보다는 ‘교사’로 학원종사자를 표현하기로 하였다.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역량과 질에 의존하게 되며, 우수한 교사는 근무환경이 뛰어나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유아대상 학원의 질적 수준을 알아보는 하나의 대표적 지표로서 교사의 복지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복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의 월급여 수준,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 일일근무시간, 휴가일수, 교직원회의 개최여부,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유아대상 학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월급여는 평균 104만 8천원이며 표준편차는 19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2004년 보육시설 실태조사(이미화 외, 2005)와 유치원 실태조사(나정 외, 2005)에 의하면, 73.1%의 민간 보육시설 교사와 90.4%의 가정 보육시설 교사가 99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고 사립 유치원 교사의 평균 연봉이 1,387만원(표준편차 376만원, 월급여 환산시 116만원, 표준편차 31만원)인 것을 비교해보면 이들 간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간시설 보육교사 보다는 약간 높고 사립유치원교사보다는 근소하게 낮아 보인다. 학원 교사의 이러한 급여수준은 위탁기관 지정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교사 월급 평균

단위: 명/만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df)
전체	176	104.8	19.8	
위탁기관여부				
위탁지정학원	41	109.0	19.7	1.67(174)
비지정학원	135	103.3	19.6	
유사기관비교 ^{주)}				
사립유치원	320	116.0	31.0	-
민간보육시설	1,059	80.8	-	-

주) 이미화 외(2005)와 나정 외(2005)의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함. 이하 모든 표의 기관비교는 이와 같은 출처에 근거하고 있음.

교사를 위한 연금·보험 등에 대해 가입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41.9%였고,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50.9%, 국민연금 40.4%, 산재보험 38.8%, 건강보험 32.5% 등이었다. 앞서 언급한 자료(이미화 외, 2005; 나정 외, 2005)에 의하면, 민간 보육시설 교사의 경우 고용보험 81.9%, 산재보험 68.3%, 국민연금 61.3%, 건강보

험 46.9% 비율로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12.4%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사립 유치원교사의 경우는 7.0%만이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 33.0%, 산재보험 31.6%, 연금보험 58.3%, 건강보험 51.7%의 가입 비율을 보였다. 이로써 볼 때, 유아대상 학원의 경우 직장 4대 기본 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학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며, 가입을 한 경우는 많은 수가 복수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서는, 지정된 학원의 연금 및 보험 가입 정도가 그렇지 않은 학원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이 교사의 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학원전체	176	72(41.9)	69(40.4)	55(32.5)	86(50.9)	65(38.8)
위탁기관여부						
위탁지정학원	41	10(25.0)	24(60.0)	21(53.8)	28(70.0)	22(56.4)
비지정학원	135	62(47.3)	45(34.6)	34(26.4)	58(44.6)	43(33.1)
유사기관비교						
민간보육시설	1,133	140(12.4)	694(61.3)	531(46.9)	928(81.9)	774(68.3)
사립유치원	2,782	196(7.0)	1,621(58.3)	1,437(51.7)	917(33.0)	880(31.6)

주: 복수응답한 결과임

다음으로, 유아대상 학원 교사의 일일근무 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9시간 38분(표준편차 1시간 4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원의 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 반 정도 근무하는데 하루 중 일반적인 유아교육에 가장 많은 시간(1시간 32분)을 사용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종일반 보육시간(1시간 25분), 등·하원 지도시간(1시간 12분), 방과후 미술지도시간(1시간 11분) 등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수업 준비에도 1시간 10분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여부는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 연구(이미화 외, 2005; 나정 외, 2005)들의 분석결과에 의해,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와 그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면, 평균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학원교사의 근무시간이 사립 유치원교사나 민간시설 보육교사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교사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수업 준비 시간	170	70.2	36.8
유아교육 시간	171	92.4	148.1
급·간식 시간	168	49.5	24.2
등·하원 시간	169	72.2	193.4
청소 시간	168	53.7	137.2
기타 행정시간	168	36.3	40.0
종일반 보육시간	171	84.8	82.4
방과후 미술지도시간	168	71.2	77.9
(학원교사) 총 근무시간	171	578.2(9시간38분)	106.2(1시간46분)
유사기관비교	민간보육시설 교사	1,104	10시간 13분
	사립유치원 교사	315	10시간 33분

주: 자료없음.

교사의 연중 휴가일수는 평균 11.8일이며 표준편차는 10.7일로 나타났다. 휴가일수는 위탁기관 지정 학원에서 더 많은 일수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유사기관으로서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는 평균 9.0일인 것으로 선행연구(이미화 외, 2005)에서 조사된 바 있으나, 표준편차가 기록되지 않아 비교는 힘들다.

<표 15> 휴가일수 평균

단위: 명, 일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원 교사	176	11.8	10.7
유사기관비교 민간보육시설교사	1,034	9.0	— ^주

주: 자료없음.

현재 학원에 근무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24.9%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원아모집과 관리에 34.1%, 급여 14.5%, 원아교육 12.7%, 근무시간과 인간관계에 각각 4.6%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어려움이 없다는 것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원아모집 비율에서는 위탁지정기관의 응답비율이 지정기관이 아닌 곳의 응답비율에 비해 약 14.6%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없음	원아 모집	원아 교육	근무 시간	급여	인간 관계	기타	
전체	173	43(24.9)	59(34.1)	22(12.7)	8(4.6)	25(14.5)	8(4.6)	8(4.6)	
위탁기관									
여부	위탁지정학원	40	14(35.0)	9(22.5)	6(15.0)	0(0.0)	8(20.0)	1(2.5)	2(5.0)
	비지정학원	132	29(22.0)	49(37.1)	16(12.1)	8(6.1)	17(12.9)	7(5.3)	6(4.5)

주: 복수응답한 결과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아대상 학원의 유아교육위탁 기관지정제도에 대해 그 기능의 적절성을 분석해 본다는 입장에서, 위탁지정을 받은 학원과 지정을 받지 않은 학원 간의 교육환경 및 교사복지라는 측면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학원이 그렇지 않은 일반학원보다 교육환경과 교사복지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내 건 후 위탁지정을 하는 제도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유아대상 학원의 환경 및 교사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 뒀인 학원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면, 교실환경 면에서 위탁기관지정이 된 학원이 자유선택활동영역을 보다 많이 구비하고 있었고 실내사육동물과 교육용 컴퓨터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에서 언어, 조형, 조작, 수, 과학 등 자유선택영역활동은 유아가 스스로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든 교재, 교구, 자료 등을 사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놀이 교육 환경으로, 유아는 이를 통해 자율성, 독립성, 책임감 등을 체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이영석 외, 1998). 즉 이러한 자유선택영역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 장으로서 효과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구비될 필요가 있다(김춘일 외, 1998). 따라서 이 항목에서의 차이는 교육 환경이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 위

탁기관 지정제도가 교실환경의 교육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겠다. 그러나 위탁지정을 받은 학원도 과반수이상(51.2%)이 자유선택활동영역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는 사실은 전체 유아대상 학원이 가진 문제로 여전히 지적될 수 있다.

실외 환경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학원 주변에 상가가 없는 비율이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이하 위탁학원)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위험물취급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의 소재에서는 차이가 없어 학원 주변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외 환경의 주요한 요소인 실외 놀이시설의 구비를 보면, 위탁지정을 받지 않은 학원(이하 일반학원)의 구비비율이 상당히 낮고 놀이시설 상대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 위탁지정을 위한 법적 조건으로 실외놀이시설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까닭으로 보인다. 즉, 위탁학원이 유치원에 보다 가까운 교육기관으로서 실외 교육적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생 및 안전 관리의 측면에서는 위탁학원이 특히 전용화장실의 위생 상태와 계단의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함을 보였는데, 이는 일반학원에 비해 이들 위탁학원들이 시설 환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

교사복지 면에서 학원의 연금/보험 가입 정도가 차이를 보여 교사(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제도에서 위탁기관 지정학원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유아교육법의 유아교육기관 위탁지정 관련 조항에 제약되어 있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지정학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일반학원보다는 위탁지정학원의 운영이 건실하고 직원복지 마인드가 높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두 종류의 학원간 교사의 월급 평균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유아대상 학원에서 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으나 그 외 복지의 측면에서 차이가 남으로써 위탁기관 지정 학원의 재정 상태나 원장의 운영 태도가 보다 건전함을 알 수 있다.

유아대상 학원에 대한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제도는 한시적인 것으로, 2009년 2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현재 정해져 있다. 이 제도는 어느 정도 교육적 환경과 수준을 가진 유아대상 학원을 유치원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배경을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나정 외, 2006).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차치한다면, 이 제도는 그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들이 교육환경개선과 교사복지증진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유아대상 학원이 존재하고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한, 이제는 재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제도라는 한계를 벗어나 유아대상 학원 전체의 교육적 환경과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관리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춘일, 조용태(1998). 유아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 나정, 류숙희, 고미경, 성화영(2005). 유치원 실태조사. 여성부.
- 나정, 김은설, 유은영, 김정현(2006). 유아미술학원중심 유아대상 학원 실태조사.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 조사. 여성부.
- 유아교육법
- 이미화, 장혜경, 김경미, 황정임, 김영란, 김영주, 김혜금, 나종혜, 문혁준, 박금희, 박응임, 이숙, 이완정, 류임량, 이수현(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 이영석, 이향재(1998). 최신 유아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 평생교육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한준상(2006). 한국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원고, 2006.3.17. 국회헌정기념관.
- 논문접수 2008년 4월 7일 / 수정본 접수 4월 24일 / 게재 승인 5월 15일
 - 교신저자: 김은설,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eskim@kicce.re.k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Consign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Environment and Teacher's Welfare

Kim, Euns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learning centers designated as entrusted institu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the law(i.e., entrusted Hakwon) with general learning centers for young children(i.e. general Hakwon) in terms of their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eachers' welfare systems. Hakwon for young children is a private academic institution that provides child care and education, which functions as a kindergarten or a child-care center in Korea. The research methods in this study are observation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both kinds of Hakwon and interviews with teachers(41 from entrusted Hakwon and 135 from general Hakwon).

The results show that entrusted Hakwon furnishes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including classroom conditions such as in-room interest areas and educational materials and sanitary conditions such as well-cleaned bathrooms and kitchens. According to the results, teachers from entrusted Hakwon usually work on better welfare systems in guaranteeing the National Pension, health benefits,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